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 1. 5. 공포, ’22. 1. 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사업시행 · 평가 ·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절차 · 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관련

- 1)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을 위한 사업, 국제적 보호지역의 복원을 위한 사업, 하천복원사업, 그밖에 자연환경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복원의 시급성 ·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안 제35조의3 신설)
- 2)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목록작성을 위한 조사 대상에 관하여 야생생물등의 서식실태 조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등을 활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제1항 신설)
- 3) 자연환경복원 대상지역의 현황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후보목록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제2항 및 제3항 신설)
- 4)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복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5 제1항 신설)

- 5) 자연환경복원사업 완료 이후 복원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유지·관리 점검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나.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 1) 현행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 대상지의 자연·생태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생태·자연도를 반영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태·자연도의 지역계수를 정함(안 제38조제2항, 별표 제2의5)
- 2)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 시 원금 외에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여 환급받는 자의 권익 보호(안 제42조제1항 후단 신설)
-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반환사업 대행자에게 사업 완료 전에 협력금 일부를 우선 반환할 경우, 반환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자의 편의 제고(안 제46조제8항제1호)

* (현행) 사업비의 50% → (개정) 사업비의 70%

- 4)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용어 정비(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1) 법 위반행위의 누적 반복에 따른 가중처분 시 누적되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에 적용되는 기간을 명확화하여 권리보호 확대(안 별표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등 국제적 보호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하천복원을 위한 사업
4. 산업화로 인한 오염부지 및 유희지 등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5.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관찰결과 등에 따라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의 시급성 및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지역 후보목록 작성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항목별로 자연환경복원 대상지역의 현황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후보목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방법, 평가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별표 2의3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을 달리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 및 비용지원 결정에 대하여 해당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복원이 완료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및 별표 2의4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비를 지원한 사업

2. 멸종위기종 복원, 탄소흡수 등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

제36조 제목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인 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
· 하천·유지·공원 이외인 토지의 면적

제38조 제목, 제38조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제38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
와 산정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에 따른다”를 “와 생태·자연도
권역·지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의6과 같다.

제40조 제목,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1호, 제40조제
1항제2호, 제40조제2항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
금”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제41조제1항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
담금”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제3항중 “생태계보전협
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제42조제1항 중 “환급하여
야”를 “환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급할 때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42조의2 제목,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2항, 제42조의2제3항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3조 제목, 제43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제2항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부담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별 훼손면적
제45조 제목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8항제2호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제46조제8항제1호중 “50”을 “70”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3호, 제52조제1항제4호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환경관서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에 필요한 모니터링
2.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또는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의2제5호, 제53조의2제6호, 제53조의2제7호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6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사무실의 면적”을 “사무실”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비고 중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기술능력	시 설	자 본 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개인: 14억원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다. 조정기사 또는 조정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 기술자 1명 이상		

별표 4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초로 요청하거나,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 현황 및 후보목록 우선순위 평가(제35조의4 관련)

1. 대상지 현황 평가

평가항목	
가. 훼손지 특성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상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나. 식생 현황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 대비 현황 등
다. 수 환경	1) 수질 2) 개방수면 비율 등
라. 토양 환경	유기물 함량, 토양 산도, 경도 등
마. 생태축 연결성	생태축 단절 현황 등
바. 야생생물 서식	1) 법정보호종 및 주요종 출현 2) 주요종 분류군별 서식조건 3)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등

2. 후보목록 우선순위 평가

평가항목	
가. 복원의 시급성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상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나. 복원 효과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 대비 현황
다. 사업추진 여건	1) 정부 및 지자체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2) 사업비 조달 계획 3) 국공유지 비율, 행정절차 등 용이성 4)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수용성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평가(제35조의5 관련)

평가항목	
1.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 중 추진 실적 평가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준수
2.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종합평가	가. 복원목표 달성 나. 평가결과 환류 다. 기술인력 활용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자연환경복원사업 종료 이후 유지·관리(제35조의6 관련)

점검 항목
1. 복원 목표 달성 유지 정도
2. 유지관리 이행의 적정성

비고: 점검항목별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및 산정방법(제38조 관련)

1. 지역계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2	
3) 생산관리지역: 2.5	
4) 농림지역: 3	
5) 보전관리지역: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4	
나.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에 따른 지역계수	
1)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30	
2) 생태·자연도 1등급: 20	
3) 생태·자연도 2등급: 10	
4) 생태·자연도 3등급: 3	
2.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방법	
면적당 부과금액 (300원/㎡)	$\times \frac{\{(용도지역별 \text{ 훼손면적} \times \text{용도지역별 지역계수}) + (\text{생태자연도 등급별} \text{ 훼손면적} \times \text{생태자연도 지역계수})\}}{2}$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6]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 (퍼센트)
1. 생태·경관보전지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100
2.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0
3.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100
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u><신 설></u>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①----- ----- ----- <u>「건축법 시행령」 제2호 가목</u> ----- ----- ----- ----- ----- -. <u>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u> <u>상)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사업을 말한다.</u> 1. <u>「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u> <u>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멸종</u> <u>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u> <u>하기 위한 사업</u> 2. <u>「습지보전법」 제9조에 따른</u> <u>협약등록습지 등 국제적 보호</u> <u>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생태</u> <u>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u>

<신 설>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하천복원을 위한 사업

4. 산업화로 인한 오염부지 및 유향지 등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5.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관찰결과 등에 따라 자연환경·생태계 복원의 시급성 및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지역 후보목록 작성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에 따

<신 설>

른 항목별로 자연환경복원 대상 지역의 현황 및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하거나 작성한 후보목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5조의5(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방법, 평가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별표 2의3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을 달리 지원할 수 있

<신 설>

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결과 및 비용지원 결정에 대하여 해당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사·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복원이 완료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해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및 별표 2의4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비를 지원한 사업

2. 멸종위기종 복원, 탄소흡수 등

	<u>국가의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u>
제36조(<u>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u>) ① ~ ② (생략)	제36조(<u>생2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u>)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u>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u>) ① (생략)	제37조(<u>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u>)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한다.	② ----- ----- -----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토지 중에서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3. 제1호 및 제2호----- -----
<u><신 설></u>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인 지역 중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공원 이외인 토지의 면적
제38조(<u>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u> ·	제38조(<u>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u> ·

징수)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시의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 또는 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그 밖의 지목인 경우에는 0

2. 녹지지역 : 2

3. 생산관리지역 : 2.5

4. 농림지역 : 3

징수) ① -----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한 지역계수와 산정방법은 별표 2의 5와 같다. -----

-----와 생태·자연도 권역·지역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 보전관리지역 : 3.5

6. 자연환경보전지역 : 4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략)

⑤ (생략)

제3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4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

<삭 제>

<삭 제>

③ ----- 생태계보전부담금

-----.

④ -----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

1. ~ 4.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의6과 같다.

제4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 -----

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재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신청)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 생태계보전
부담금-----

----- 생태계보전
부담금-----

-----.

1. 생태계보전부담금-----

2. 생태계보전부담금-----

3. (현행과 같음)

② -----

----- 생태계보전부담금-----

-----.

제41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① -----

---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고자 하는

-----.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 -----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 환급해야-----. 이
경우 환급할 때에는 부담금을 납
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

③ -----
----- 생태계보전부담금-----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생략)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 법 제4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생태계보전부담금 --

-----,
-----.

③ ----- 생태계보전부담금 -----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① -----

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액

2.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징수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 법 제46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 (생략)

-----.

1. 생태계보전부담금 -----

2. 생태계보전부담금 -----

② -----
-----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

-----.

제44조(통보하여야 하는 사업 인·허가등의 내용) -----

-----.

1. 생태계보전부담금 -----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 4. (생략)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 5.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 .

자연도의 권역·지역별 훼손면적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
의 용도) -----

-----.

1.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 -----

-----.

-----생태
계보전부담금-----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태계보전

부담금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2. (생략)

⑦ (생략)

⑧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⑨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

----- 생태계보전
부담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

1. -----
----- 70 -----

2. -----

---- 생태계보전부담금-----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통지
4.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8. (생 략)
9.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의 수립·시행

10. ~ 13. (생 략)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생 략)

제52조(권한의 위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생태계보전부담금-----

3. -----

----- 생태계보전부담금-----

4. ----- 생태계보전부담금-----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10. ~ 13.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현행

<신 설>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52조에 따라 환경
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
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공
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에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태계
의 변화내용 관찰에 필요한 모
니터링
2.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자
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또는 자
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4. (현행과 같음)

5. ----- 생태계보전부담금

<u>력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u>	-----
6. 법 제47조에 따른 <u>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인·허가등 통보에 관한 사무</u>	6. ----- <u>생태계보전부담금</u> ----- ---
7. 법 제50조에 따른 <u>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대상사업 승인에 관한 사무(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에 관한 동의를 포함한다)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지원에 관한 사무</u>	7. ----- <u>생태계보전부담금</u> - ----- -----<u>생태계보전부담금</u> ----- ----- <u>생태계보전부담금</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u>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 ----- <u>생태계보전부담금</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24